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정책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91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업무영의원 대표발의(2201691)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1
Ⅲ. 주요내용	2
Ⅳ.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	4
2. 제정안의 구성체계	10
3. 주요 조문별 검토	11
1)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11
2)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16
3) 교통계획의 구분 등(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22
4) 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5조)	31
5) 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내용(안 제16조)	37
6) 도교통계획 및 시·군교통계획의 수립 등(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42
7)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안 제20조)	48
8) 교통계획 등의 확정·고시,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51
9) 교통계획의 평가 등(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57
10)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안 제24조 및 제25조)	60
11)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65
12) 부칙	67

□ ь태영의원 대표발의(2201691)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ь태영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4. 07. 12.

다. 회 부 일 : 2024. 07. 15.

II. 제안이유

그간 교통정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 도시권역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또한,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모빌리티 활성화 등 교통정책의 기본 원칙 및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통 정책과 관련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

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전국에 대한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하며,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이동편의, 교통기술, 모빌리티 등의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나. 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군교통계획을 규정하고, 계획간 연계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각 교통계획간 관계를 정립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라.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
- 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군수는 시·군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 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안 제17조).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4조).
-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자.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및 교통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통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

가. 제정안의 취지

현행 교통 관련 법률은 46개¹⁾에 달하고 있으나,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의 교통정책들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행 교통 관련 법률 중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²⁾,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목적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는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있음.

1) 제명에 교통, 자동차, 주차장, 항공, 해양, 해운, 철도가 포함된 법률 기준, 항공우주, 경찰, 수산, 생태계, 자원보전, 공사·조합설립, 동산 저장 관련법은 제외(자료: 국토교통부)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이하 생략)

최근 저출산·고령화, 도시권역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의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이동 서비스라는 질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맞이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교통관련 법률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형태로 입법화되고 법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률 상호 간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제정안은 균형발전, 지속가능성, 교통안전과 교통약자 이동편의의 증진, 교통기술의 진흥과 모빌리티 혁신·활성화 등을 위하여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의 방향 및 종합적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임.

참고로,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정부가 「교통기본법안」을 제출한 이후 동일 제명의 의원발의 법률안 3건³⁾이 제출되었으며, 제19대, 제20대 및 제21대 국회에서도 각각 의원발의로 「교통기본법안」이 제출⁴⁾되었으나, 모두 임기만료폐기되었음.

3) 현기환의원, 강기갑의원,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4) 제19대·제20대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제21대 장경태의원(교통기본법안), 엄태영의원(교통정책기본법안)

나.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 중 「국토기본법」은 국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 국토계획의 수립·시행 및 조정,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 분야에 관해서는 이러한 최상위에 위치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1982년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교통권을 사회권의 하나로 명기하고 그 실현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이동성 지향법」을 제정하여 교통정책 전반에 대한 장래 목표와 투자 방향 설정, 일상생활 속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책,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성 혁신 등 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 및 실현방안을 담고 있음.

일본에서는 2013년 「교통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교통의 국제 경쟁력 강화, 환경부담의 경감, 도시정비와의 연계 등까지 교통과 관련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으면서, 교통정책 시행의 기본이념과 그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⁵⁾.

교통 분야에서도 기본법에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교통정책 이념 등을 명시함으로써 개별법의 제·개정이나 정책·계획 수립시에

5) 「교통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2023.12. 국토교통부, 한국법제연구원. p. 12.. p.11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를 고려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 관련 계획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개별법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법 제정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안 제2조 정의 규정의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서도 ‘선박’, ‘항만’ 등 해양수산부 소관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선박과 항만 등 해상 교통 정책은 현재 해양수산부의 소관임에도, 제정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으며, 현재 최상위 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 ~ 2040)”에도 해양 교통 관련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도 동 제정안의 대상에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선박, 항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둘째, 국가교통기본계획, 도 및 시·군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안 제16조의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제정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정책 기본법의 기본방향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누락이 있는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 및 시·군교통계획은 국가교통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국가가 제시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실제로 시행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나,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 도 및 시·군교통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국가교통기본계획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제정안은 현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구성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교통위원회’,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제정안으로 옮겨오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등을 삭제하고 있지 않아 중복적으로 위원회가 존재하게 되는 점,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사항의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24조와 안 제25조에서는 교통서비스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말하는 교통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는바, 교통서비스의 평가와 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용역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교통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반영이 가능하도록(양적 인프라 확충 → 질적 서비스 개선) 개선하고, 특히, 전국의 교통서비스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행 법령과 그에 따른 제도 기반(계획 수립 등)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체계 마련 및 행정 부담 완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기본법 제정에 동의함.

2.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32개의 조문과 1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	
제1조 목적	제17조 도교통계획의 수립
제2조 정의	제18조 시·군교통계획의 수립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 도 및 시·군교통계획 수립의 효과
제4조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및 기능 증진	제20조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제5조 교통의 균형발전 강화	제21조 교통계획 등의 확정·고시
제6조 지속가능 교통기반의 조성	제22조 교통계획의 평가 대상 및 기준
제7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제23조 교통계획의 평가
제8조 교통안전의 강화	제24조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제9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제25조 교통서비스의 평가
제10조 교통기술의 진흥	제26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1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제27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 국제협력의 증진	제28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 교통계획의 구분	제29조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 교통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30조 지방교통위원회
제15조 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제3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7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8조 국가교통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제9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국가교통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5조 도 및 시·군교통계획 수립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 국가교통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3. 주요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교통정책의 방향과 시행의 기본적인 사항 및 국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안 제2조는 교통, 교통서비스,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며, 교통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정책의 방향과 시행의 기본적인 사항 및 국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교통 ”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2. “ 교통서비스 ”란 사람 또는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요구되는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 교통수단 ”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

제정안
· 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4.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5.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교통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교통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교통정책의 방향과 시행의 기본적인 사항 및 국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 교통분야의 기본권적 성격을 지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목적 조항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국가 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 인프라의 양적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제정안의 목적규정은 국토 분야의 기본법인 「국토기본법」의 목적조

항과 유사하게 동 법이 기본법으로서 ‘교통정책의 방향과 시행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교통서비스’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수요자 중심의 질적 측면과 국민의 권익보장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토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해상교통·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중 ‘교통’,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정의 규정과 동일함.

< 정의 규정 비교 >

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을 말한다.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교통수단”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에 이용되는 자전거·자동차·열차·항공기 및 선박 등을 말한다.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 등의 시설과

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교통체계”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안 제2조제3호에서는 “교통수단”에 ‘선박’을 포함하고 있고, 안 제2조제4호에서는 “교통시설”에 ‘항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정안에는 선박이나 항만 등 해양수산부 소관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정의 규정에서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 제2조제2호는 ‘교통서비스’를 ‘사람 또는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요구되는 교통수단, 교통시설 및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교통서비스’란 용어는 학술논문, 보고서 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으며⁶⁾,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자의 공간적 이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음⁷⁾⁸⁾.

6) 「교통정책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2023.12. 국토교통부, 한국법제연구원. p. 117.

7) 박경아·강동운, “교통서비스 지역 양극화 현상 진단 및 격차 해소방안”, 한국교통연구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 제정안에서는 “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학술적 용어와 “교통”의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제정안의 ‘교통서비스’ 용어의 정의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안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이 법이 교통정책에서 가장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최상위 규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교통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음.

「관광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가보훈 기본법」 등 다른 기본법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두고 있음.

「관광기본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023.5월. p.2.

8) 제정안과 같은 의미로 현행 법률에서 정의를 두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음.

2)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및 기능증진, 교통의 균형발전 강화, 지속가능 교통기반의 조성,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교통안전의 강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교통기술의 진흥,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국제협력의 증진 등 제정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4조(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및 기능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상·해상·항공 등 부문별 교통체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교통체계 간에 효율성·통합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교통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교통체계의 기능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의 균형발전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교통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 교통기반의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저탄소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교통기반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중교통수단 이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지원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안전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계,

제정안
학계, 연구기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기술 개발·보급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과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기반조성, 기술도입·확산 등 모빌리티 혁신 체계 수행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국제협력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정책 개발, 전문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 등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기관과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정안이 교통정책기본법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이념을 열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함으로써 교통정책에 대한 기본적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국토기본법」에서도 유사하게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조항에서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현행 교통 관련 최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⁹⁾에 따라 수립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

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40)”(2021.12.)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로 ①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②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③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④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 ⑤글로벌 교통 공동체 기반 마련을 두고 있음.

<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이동의 자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목표	◆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 ◆ 일상속의 자율교통 ◆ 글로벌 교통 공동체 실현	
주요 정책 과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 고속 국가 철도망 완성 • 국가 간선도로망 완성 •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공항인프라 구축 • 국가 수출입 관문 항만 경쟁력 강화
	언제 어디서나 접근가능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 대중교통 수단·서비스 다양화 • 복합환승센터 확대 구축
	친환경 첨단 모빌리티의 일상화	•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 • 첨단 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 교통·물류의 스마트화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통사회 실현	• 사람 중심의 도로 교통 체계로 개편 • 노후교통시설 생애주기 관리 • 교통약자에 대한 복지체계 강화
	글로벌 교통 공동체 기반 마련	• 남북간 교통인프라 연결 및 현대화 • 유라시아 대륙과 한반도 연결성 강화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교통 관련 주요 법률과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제정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내용은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목표·추진전략과 현행 주요 법률의 내용을 기본방향에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교통관련 현행 법률 주요내용과 제정안의 기본방향 관련 여부 >

구 분	법률	주요내용
안 제4조	국가통합 교통체계 효율화법	○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및 연계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광역교통법	○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편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교통관리체계 정비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등	도로법	○ 도로망의 정비와 적절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노선을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도로의 관리·시설기준·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
	철도 건설법	○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역세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철도건설, 역세권개발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법	○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 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공항시설법	○ 공항·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간선급행 버스체계 건설법	○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경제성을 결합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건설·운영 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여객자동차 운수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화물 자동차 운수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택시사업 발전법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방향과 총량제, 감차, 위반행위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구 분	법률	주요내용
안 제7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 대중교통(노선버스, 도시철도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교통안전법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교통수단 안전점검·특별실태조사·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
안 제9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모빌리티의 정의, 모빌리티 현황 조사, 모빌리티 혁신 인프라 대책 및 실증특례, 특화도시 조성 사항 등을 규정

*자료 :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를 통해 향후 교통정책의 지속적·안정적·통합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분야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통합교통에 관한 안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통합교통체계의 기능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안 제7조에서는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 조항을 조화롭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5조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교통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과 같이 대응하는 지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경우, 각 대응하는 지역 간의 균형에 한정하여 교통발전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교통발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통기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①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② 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③ 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④ 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⑤ 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⑥ 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즉, 지속가능한 교통기반의 조성이 ‘저탄소 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문구의 수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3) 교통계획의 구분 등(안 제13조 및 안 제14조)

가. 제정안의 내용

안 제13조에서는 교통계획의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군교통계획’으로 교통계획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음.

안 제14조에서는 ‘국가교통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통계획 사이의 위계와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3조(교통계획의 구분) ① 이 법에서 교통계획이란 교통발전을 위하여 교통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교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군교통계획으로 구분한다.
1. 국가교통기본계획: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구축 및 장기적인 교통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2. 광역교통계획: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 및 장기적인 교통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도교통계획: 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교통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4. 시·군교통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교통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제정안
제14조(교통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교통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군교통계획의 기본이 되고, 도교통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교통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국가교통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하며 기본이 된다.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교통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13조는 “교통계획”의 법률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교통계획을 국가-광역-도-시·군으로 공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각 교통계획 간 위계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교통계획 체계도 >

국가교통기본계획	국가의 효율적 교통체계 구축 및 장기적 교통발전방향 제시	다른 교통계획의 기본이 됨
↓		
광역교통계획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관리 및 교통발전 방향 제시 *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도교통계획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통발전방향 제시	시·군교통계획의 기본이 됨
↓		
시·군교통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군의 교통발전방향 제시	

이러한 제정안의 체계는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및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의 입법례와 유사함.

< 제정안과 「국토기본법」 비교 >

제정안	국토기본법
제13조(교통계획의 구분) ① 이 법에서 교통 계획이란 교통발전을 위하여 교통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 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 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② 교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군교통계획 으로 구분한다.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 으 로 구분한다.
1. 국가교통기본계획 :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 체계의 구축 및 장기적인 교통의 발전 방 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1. 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 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광역교통계획 :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 교통 관리 및 장기적인 교통발전 방향을 제 시하는 계획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 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1의2. 초광역권계획 :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 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 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 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 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 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 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3. 도교통계획 : 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할 지 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교통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종합계획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 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4. 시·군교통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장기적인 교통발전 방 향을 제시하는 계획	3.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특별자 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 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

제정안	국토기본법
	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 계획 4.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제14조(교통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교통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시·군교통계획의 기본이 되고, 도교통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교통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①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교통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하며 기본이 된다.	②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교통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계획을 따를 수 있다.

교통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최상위 계획을 신설하는 경우, 새롭게 개편되는 교통계획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계획의 범위와 내용, 계획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안은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에서는 최상위 ‘국가교통기본계획’ 외에 “도교통계획”과 “시·군교통계획”을 별도로 2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교통 관련 법률에서는 각 개별법 단위로 지방교통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어있으며, 지방교통계획의 주체와 수립 주기도 개별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주요 법률의 기본계획 및 지방교통관련 계획 예시 >

구 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안전법	물류정책기본법
기본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 발전 기본계획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국가물류 기본계획
	5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5년마다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
지방계획	지방대중 교통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지역물류 기본계획
	5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 (5년마다 수립)

구 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교통안전법	물류정책기본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나 군수(광역시 군수 제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현행 교통관련 법률에서 유사·중복되는 각종 법정계획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 등¹⁰⁾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과 같이 장기적인 지방교통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는 경우, 중복적인 현황·전망, 통계 조사와 개별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같은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교통정책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에 따른 활성화 계획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대중교통 활성화 관련 계획을 개별법의 목적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였으나, 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10) 2010년 11월, 정부제출 「교통기본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음.

현행 「대중교통법」¹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¹²⁾ 등에서도 수립권자가 관련 교통계획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내용이 이미 존재하는바, 제정안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기본이 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체계·자구 측면에서 안 제13조제2항제4호에서는 ‘시’가 누락되어 도(道)내 ‘시장’이 시·군교통계획의 주체에서 빠져 있어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³⁾.

1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안 제18조(시·군교통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기본계획 및 도교통계획에 따라

둘째, 제정안은 법률 간 중복적인 부분을 삭제하기 위하여 부칙 제 10조제1항에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를 삭제 하고 있는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안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반영이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할 구역의 시·군교통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는 5년마다 시·군교통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교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교통의 특성 및 교통이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양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제4항은 「도로법」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등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5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6항은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있음.

제정안이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 기존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가교통기본계획’으로 대체되는바, 다른 법률 간의 관계 및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도 제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5조)

가. 제정안의 내용

안 제1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년 단위로 국가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은 기본계획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본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제정안
제15조(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20년 단위로 국가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제정안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은 기본계획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본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15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교통에 관한 최상위계획으로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교통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고, 변화하는 환경 및 정책 방향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안 제15조제1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¹⁴⁾

2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절차 입법례와 유사하며,

「국토기본법」 상 “국토종합계획¹⁵⁾”,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상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¹⁶⁾”, 「환경정책기본법」 상 “국가환경종합계획¹⁷⁾” 등 기본법상 최상위 계획의 수립기간도 20년이고, 제정안에 따른 “국가교통기본계획”의 하위에 위치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기간도 20년임을 감안할 때, 국가교통기본계획의 20년 단위는 적절한 기간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5) 「국토기본법」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초광역권 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1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첫째, 안 제15조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안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받은 기본계획안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본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15조제2항의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에게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으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 요청은 안 제15조제3항에서 말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보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절차를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계획 수립 및 검토 준비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18),

1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립 절차를 살펴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계획 수립 준비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 → ③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이를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 작성 → ④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전 심의안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시·도지사 의견 청취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 → ⑥ 국토정책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 절차를 거침(「국토기본법」 제9조, 제12조¹⁹⁾).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9) 「국토기본법」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8. 1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안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에게 소관별 계획안 제출을 요청한 경우 이를 기초로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토기본법」 제12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소관별 계획안을 반영하여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30일 이내 의견 제시),

안 제15조제3항은 이러한 절차가 혼용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의 절차를 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검토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 요청과 ② 국가교통위원회 심의²⁰⁾ 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제시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 **안 제2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 5. (생략)

안 제21조(교통계획 등의 확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국가교통기본계획의 수립내용(안 제16조)

가. 제정안의 내용

안 제16조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16조(기본계획의 수립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교통의 수요 및 공급 전망 3.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정책·계획의 종합·조정 및 연계 4. 광역교통정책의 방향 5. 도시 및 지역 내 교통정책의 방향 6.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7.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전략 8. 국가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및 정비사업 9.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10.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시설 설치·확충 등 대중교통정책의 방향과 추진 전략 11.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과 추진 전략 12. 교통약자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 확충 및 지원 13.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14.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15.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부수되는 사항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국가교통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교통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과 ‘교통의 수요 및 공급 전망’을 기본으로 하여, 그 외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에서 정한 교통정책 기본법의 기본방향과, 각 개별법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특히, 제정안의 부칙 제10조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삭제되어 국가교통기본계획에 흡수 통합되는바 동 계획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도 국가교통기본계획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 제정안에 따라 삭제되는 교통관련 기본계획 (부칙 제10조) >

법률	조항	비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삭제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삭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삭제
	제8조(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삭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삭제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삭제

< 제정안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정안의 기본방향, 교통관련 기본계획 내용 비교 >

제정안	제정안의 기본방향 등
1. 교통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
2. 교통의 수요 및 공급 전망	-
3.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정책·계획의 종합·조정 및 연계	안 제4조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및 기능 증진
4. 광역교통정책의 방향	안 제4조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및 기능 증진
5. 도시 및 지역 내 교통정책의 방향	안 제4조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및 기능 증진 안 제5조 교통의 균형발전 강화
6.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	안 제4조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및 기능 증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 ‘국기기간교통망계획’
7.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전략	안 제4조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및 기능 증진
8. 국가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및 정비사업	안 제4조 통합교통체계의 구축 및 기능 증진 안 제6조 지속가능 교통기반의 조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 ‘국기기간교통망계획’
9.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 개발, 전환교통 촉진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안 제6조 지속가능 교통기반의 조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10.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시설 설치·확충 등 대중교통정책의 방향과 추진 전략	안 제7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대중교통법」 상 ‘대중교통기본계획’
11.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과 추진 전략	안 제11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12. 교통약자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 확충 및 지원	안 제9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13.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
14.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안 제10조 교통기술의 진흥
15.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부수되는 사항	-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6조제3호에서는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정책·계획의 종합·조정 및 연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해운’은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내용으로, 2021년 수립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에도 포함되지 않는바 내용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6조제12호에서는 ‘교통약자의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 확충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과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문구를 이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의 보급과 이동편의 시설 확충 및 지원’ 등으로 수정하는 편이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6조제13호에서는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관련 내용은 안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교통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한 ‘영향평가’ 관련 내용은 제정안에 담겨 있지 않은바,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교통정책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으로, ‘교통서비스 모니터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지엽적이고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안 제23조의 ‘교통계획의 평가’, 안 제24조의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안 제25조의 ‘교통서비스의 평가’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문구를 ‘교통계획 및 교통서비스 평가 방안과 추진전략’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제정안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에는 ‘교통의 균형발전 강화’(안 제5조)와 ‘교통안전의 강화’(안 제8조), ‘국제협력의 증진’(안 제12조)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안 제16조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섯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는 ‘그 밖에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중교통기본계획’에는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 추가적으로 필요시 하위법령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안 제16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바 이를 포함할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도교통계획 및 시·군교통계획의 수립 등(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안 제17조는 도시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교통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광역시 군수 제외, 이하 “시장·군수”)가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시·군교통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19조에서는 이러한 도 및 시·군교통계획 수립 시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들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음.

제정안
제17조(도교통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교통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5년마다 도교통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교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기본목표 및 방향 2. 관할구역에 대한 교통 수요 및 공급 전망 3. 관할구역의 교통시설 배치·규모·설치 현황 및 전망 4. 관할구역의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구역의 시·군 간 교통수단의 연계 및 강화 6. 도교통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제정안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교통계획 수립기준 및 작성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교통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기본계획”은 “도교통계획”으로, “기본계획안”은 “도교통계획안”으로 본다.

제18조(시·군교통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는 기본계획 및 도교통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할 구역의 시·군교통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는 5년마다 시·군교통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교통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교통의 특성 및 교통이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교통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교통수단간 수요 현황과 공급 전망

3.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6. 시·군교통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교통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 및 시·군교통계획 수립의 효과)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7조에 따른 도교통계획, 제18조에 따른 시·군교통계획에 다음 각 호의 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1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제정안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여러 분야에 걸쳐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수립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교통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적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교통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도 및 시·군교통계획은 ‘국가교통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는바, 국가교통기본계획에서 수립된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교통정책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국가가 제시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을 실제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행·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그런데 안 제18조와 안 제19조에서 도 및 시·군교통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안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교통기본계획의 내용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도교통계획 (안 제18조제1항)	시·군교통계획 (안 제19조제1항)
1.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기본목표 및 방향 2. 관할구역에 대한 교통 수요 및 공급 전망 3. 관할구역의 교통시설 배치·규모·설치 현황 및 전망 4. 관할구역의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구역의 시·군 간 교통수단의 연계 및 강화 6. 도교통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교통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교통수단간 수요 현황과 공급 전망 3.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6. 시·군교통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 제17조에서 도교통계획에는 ‘관할구역의 교통정책 기본목표 및 방향’ 등 ‘관할구역’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안 제19조의 ‘시·군교통계획’에는 ‘관할구역’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 범위가 모호한 측면이 존재함.

또한, 안 제17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교통계획에 ‘관할구역의 교통시설 배치·규모·설치 현황 및 전망’이라는 현황 자료 규정만을 두고 있고, 안 제18조 제1항제3호에는 시·군교통계획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이라는 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처럼 각 계획의 내용이 달리 정해진 기준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안 제17조제1항제4호와 안 제18조제1항제4호에서는 동 제정안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은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는 ‘교통서비스 고도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 제정안의 목적 중 하나가 교통수단 등의 양적 확충 만이 아니라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교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도 및 시·군교통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안 제19조는 도 및 시·군교통계획에 ①「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②「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③「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④「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⑤「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작 도 및 시·군교통계획에는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도시 및 지역 내 교통정책,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약자 교통서비스 및 교통안전 등 안 제1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도 및 시·군교통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제정안에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안 제20조)

가. 제정안의 내용

안 제20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및 시·군교통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0조(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국가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도교통계획 및 시·군교통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또는 해당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국가, 도 및 시·군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교통정책을 수립에 있어 계획수립의 투명성·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동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주요 목적이 최근 저출산·고령화, 도시권역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의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이동 서비스라는 질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부응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 등 교통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절차를 두고 있는 안 제20조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안 제20조의 조문은 「국토기본법」 제11조의 입법례와 유사함.

「국토기본법」

제11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광역교통계획’도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안 제13조제2항에서 ‘광역교통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말함.

그런데,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 이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21)항에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

2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이하 “광역교통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회를 거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²⁾.

22) 다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의
반영 의무는 없음.

8) 교통계획 등의 확정·고시,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가. 제정안의 내용

안 제21조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절차 및 도 및 시·군교통계획 수립·변경 시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기본계획, 도 및 시·군교통계획의 심의 기관으로서 ‘국가교통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1조(교통계획 등의 확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7조에 따른 도교통계획, 제18조에 따른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2. 시장·군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도지사는 승인 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제정안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교통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군교통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해당 시·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교통계획의 평가 결과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국가의 중요 교통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2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검토·조정

제정안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2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 ② 기본계획의 확정 → ③ 공보에 공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 송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1조제2항에서는 도지사, 시장·군수는 도교통계획 또는 시·군교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①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 → ②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도지사) 또는 도지사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시장·군수) → ③ 도 및 시·군교통계획의 확정 → ④ 공보에 공고(도지사 및 시장·군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 송부(도지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교통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계획의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교통계획의 적정성·이행가능성·수립 내용의 적합성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전문기구에 의한 심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내용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기본계획 등의 심의기구로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교통위원회’와 같은 법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통위원회’를 가지고 오면서, 부칙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설치, 구성, 심의 등에 대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데,

제정안 부칙 안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부터 제110조까지를 삭제하지 않고 있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는 경우 양 법에 국가교통위원회와 지방교통위원회가 존재하게 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국가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 등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교통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집행 실적 평가
3.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4.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수립 및 변경
- 4의2. 개별교통조사에 관한 자료의 조정

5.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 설정
 6.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및 변경
 8.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변경
 9. 제44조제1항에 따른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내용 중 중요 사항의 변경
 11.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수립 및 변경
 12.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삭제 <2020. 6. 9.>
 14.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 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범사업을 포함한다)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16.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된다.
- ③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1. 당연직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위촉직 위원: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교통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분야별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안전에 대한 검토·조정
 2. 국가교통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소관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교통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또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의 표와 같은데,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①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②교통계획의 평가 결과,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개발사업 또는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등 국가교통정책의 종합조정, ④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⑤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 국가교통위원회의 기능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남.

따라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상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제정안에 반영하거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개정을 통해 제정안에 근거한 국가교통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인용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교통계획의 평가 등(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가. 제정안의 내용

안 제22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교통계획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23조는 안 제22조에 따른 교통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수립권자가 해당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교통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현지조사 의뢰, 의견 청취,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2조(교통계획의 평가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교통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교통계획의 평가기준은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교통계획의 평가) ① 제22조에 따른 교통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수립권자는 해당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

제정안
통계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통계획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통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계획평가요청서 제출 시기, 제2항에 따른 교통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교통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교통정책의 방향과 시행의 기본적인 사항 및 국민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처럼 기본법에서 정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제시한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이 국가교통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 및 평가를 하는 절차는 필요한 측면이 있음.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에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의3에서 국토계

획 평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2조와 안 제23조는 「국토기본법」의 입법례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보임.

「국토기본법」

제19조의2(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평가의 기준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국토계획평가의 절차)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대상이 되는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국토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중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시기, 제2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및 그 밖에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국토기본법」 제19조의2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계획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안 제24조제1항에서도 교통서비스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기본법」의 입법례에 따라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교통계획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안 제24조 및 제25조)

가. 제정안의 내용

안 2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서비스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시 등에 대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함.

안 제25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서비스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한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이하 “교통서비스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제정안
제24조(교통서비스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에 대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통서비스 모니터링 기준·방법, 결과의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교통서비스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제정안

통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교통서비스 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서비스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통서비스 평가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교통의 공공성과 편리성, 안전성 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교통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교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토기본법」 제25조의2²³⁾에서도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

23) 「국토기본법」

제25조의2(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변화상과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이하 “국토모니터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을 수립할 때, 국토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중교통법」 제16조²⁴⁾에서도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대중교통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17조²⁵⁾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9.>

1.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적 지표
2.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5.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²⁶⁾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등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의²⁷⁾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조사 및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입법례와 유사하게 안 제24조와 안 제25조에서도 국토교통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정책이 실제 교통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지 현황

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
- 2의2.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체계 구축 현황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 5의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의2(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동편의와 보행환경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하 “교통복지지표”라 한다)를 개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복지지표를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수준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교통복지지표의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교통서비스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에서 말하는 교통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는바, 동 규정이 실효성 있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연구용역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권한의 위임·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안 제31조 및 안 제32조)

가. 제정안의 내용

안 제31조는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안 제32조는 국가교통위원회 및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게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교통위원회 및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행정 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맡겨 수임기관의 명의로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국가교통위원회 및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²⁸⁾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인 것으로 보임.

28)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2) 부칙

가. 제정안의 내용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국가교통 기본계획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부칙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 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0조에서는 이 법 시행에 따라 다른 법률의 내용에서 폐지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부칙 제11조에서는 이 법 시행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폐지되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음.

제정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교통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7조에 따른 도교통계획 및 제18조에 따른 시·군교통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제정안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통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 관계 법령에 따른 지침·결정·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교통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계획은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왼쪽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계획	종전의 계획
국가교통기본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표의 오른쪽 칸의 계획에 관하여 종전의 해당 법률에 따라 공청회 또는 주민 의견청취 등을 거친 경우 당해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해당 법률에 따라 계획 내용을 관보 등에 공고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한다.

제5조(도 및 시·군교통계획 수립의 효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는 이 법 시행 후 계획수립권자가 처음 수립하는 기본계획, 발전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가교통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는 각각 제2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제3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이 법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본다.

제8조(국가교통위원의 구성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은 새로운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제정안
을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이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8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는 새로운 국가교통실무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될 때까지 이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교통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111조제1호 중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각각 “국가교통기본계획”으로 한다. ②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제1항 본문·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각각 “국가교통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본계획”을 각각 “국가교통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현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교통 관련 법률 등의 최상위 기본법적인 위치를 지니고 있으나, 동 법률안에 따라 교통 관련 법률의 기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법률 간 위계와 다른 법령 간의 관계, 새롭게 신설되는 기본계획, 도 및 시·군교통계획 등의 적용례, 국가교통위원회와

지방교통위원회 근거 법률의 변경 등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정안 부칙과 같이 준비행위, 경과조치, 적용례,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부칙 제10조에 따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은 삭제하고 있으나,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교통위원회,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지방교통위원회에 대해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관련 내용의 삭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부칙 제10조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내용 >

구 분	대상 조항	내 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삭제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삭제
	제6조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국가교통기본계획
	제12조 국가교통조사	
	제18조 타당성 평가	
	제111조 국민 등의 의견 수렴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삭제
	제8조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삭제
	제9조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 국가교통기본계획
	제11조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31조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구 분	대상 조항	내 용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삭제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등	삭제
	제7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기본계획 → 국가교통기본계획

문 의 처
02)6788-5584